

정 관

LSE티라유텍(주)

정 관

제 정 : 2006. 08. 25

개 정 : 2019. 05. 15

2019. 09. 19

2021. 03. 30

2023. 03. 30

2025. 03.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LS티라유텍 주식회사”라 칭하며, 한글로는 “엘에스티라유텍 주식회사”라 표기한다.

영문으로는 “LS THIRA-UTECH CO., LTD.” (약호 LS THIRA-UTECH)라 표기한다 (’ 25. 03. 20 개정)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자문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3. 컴퓨터, 통신전자기기, 주변기기 도,소매업
4. 부동산임대업
5.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6. 자동제어장비, 무인운반차, 물류장비 도매업
7. 교육 지원 서비스업
8.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 알선업 (’ 23. 03. 30 개정)
9. IT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23. 03. 30 개정)
1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 (’ 23. 03. 30 개정)
11. 가상화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사업 (’ 23. 03. 30 개정)

12.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서비스업 (’ 23. 03. 30 개정)

13. 무역업 (’ 23. 03. 30 개정)

14.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23. 03. 30 개정)

15. 학술, 연구개발 용역업 (’ 23. 03. 30 개정)

16. 위 각항에 관련하는 부대사업일체 (’ 23. 03. 30 개정)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사무소 그리고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thirautech.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

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한다.
4.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3. 03. 30 개정)

제 9 조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1/4로 한다.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의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2. 본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가액과 미지급 누적 배당액 및 발행가액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 연복리 10%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3.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액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잔여재산분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등하게 분배한다.
4. 잔여재산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본 회사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제 9 조의 3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의 4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1/4로 한다. (’ 23. 03. 30 개정)
2.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

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함)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의 5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1/4로 한다. (’ 23. 03. 30 개정)

2.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을 본다.

4)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5)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 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나.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3.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1.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3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4)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방식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3.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 14 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

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 3 (주식의 소각) (' 23. 03. 30 제정)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 4)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2.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3. 03. 30 개정)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7. 이사회는 사채의 권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4호 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23. 03. 30 개정)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4)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3. 03. 30 개정)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

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3. 03. 30 개정)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7. 이사회는 사채의 권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4호 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23. 03. 30 개정)

제 18 조의 2 (교환사채의 발행) (' 23. 03. 30 제정)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과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23. 03. 30 개정)

제 19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3. 03. 30 개정)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총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

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 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2.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의 2 (삭제) (' 23. 03. 30 삭제)

제 28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29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1 조 (의결권 불통일행사)

1.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임원 과 이사회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4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23. 03. 30 개정)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35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36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본 회사는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단, 사장 수인을 두어 공동 또는 각자 대표하게 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23. 03. 30 개정)
3.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는 즉시 그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일상 업무는 등기임원 중 차상위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23. 03. 30 개정)

제 38 조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회의주관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3 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내지 제 43조(이사회의 의사록) 규정을 준용한다. (' 23. 03. 30 개정)

제 44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임원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다.
4. 임원의 업무상 사망시 유족보상 및 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유족 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5.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45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6 조 (사업 연도)

본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년 사업 연도 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9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 1항의 배당은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23. 03. 30 개정)

제 50 조 (중간배당)

1.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6)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제1항의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52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03월 30일 변경하며, 변경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03월 30일 변경하며, 변경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정관 제34조는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03월 20일 변경하며, 변경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별첨]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
2.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2025년 3월 20일
LSE티라유텍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7, 4층,6층(논현동)
대 표 이 사 김 정 하 (법인인감)

(별첨) 1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23. 03. 30 개정)

1. 본 규정은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등기임원) 및 감사와 대표이사가 선임하여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촉임원(미등기임원)을 말한다.

※ 위촉임원(미등기임원) : 대표이사로부터 경영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수행함으로서 등기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3. 본 규정은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3 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퇴직금 중간정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 4 조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

1.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한다. (' 23. 03. 30 개정)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근무기간이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times \frac{1}{12}$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times$ 지급률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이를 1개월로 본다)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2. 임원퇴직급여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23. 03. 30 개정)

임원의 직급	지급률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대표이사	2 배수	-
이사	1.5 배수	1.2 배수

제 5 조 [재임연수의 계산] (' 23. 03. 30 개정)

1. 재임기간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실제 해임일 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 6 조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의 50% 범위 이내
2.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3. 재직 중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 당시 퇴직급여의 100% 범위 이내로 선임된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지급

제 7 조 [지급제한] (' 23. 03. 30 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급을 제한한다.

1. 위촉 임원(미등기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 기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해임 결의가 있을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원퇴직금(공로금, 위로금)외에 별도의 임원 유족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1.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3.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에 한한다.
4.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3 조 [지급사유]

당사는 임원유족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제 4 조 [유족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2.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시 : 평균임금의 365일 이내

제 5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